

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유 용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자유한국당 비례 출신 이 성 배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-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와 개선 권고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,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포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, 교육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첫째, 서울시의 책무에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법·제도 개선을 추가하는 것입니다.

- 둘째, 보이스포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- 셋째,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시와 자치구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평가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정비를 권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- 넷째, 「소비자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변경된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!

- 본 개정안은 소비자단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권익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였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